

정관

1964년 9월 1일 제정	2019년 3월 22일 개정
1967년 7월 7일 개정	2021년 3월 23일 개정
1968년 2월 24일 개정	2023년 3월 22일 개정
1969년 2월 25일 개정	
1969년 12월 8일 개정	
1970년 4월 1일 개정	
1971년 2월 25일 개정	
1971년 6월 10일 개정	
1972년 11월 20일 개정	
1978년 6월 22일 개정	
1983년 3월 25일 개정	
1983년 11월 26일 개정	
1984년 2월 28일 개정	
1985년 3월 18일 개정	
1987년 3월 20일 개정	
1988년 3월 11일 개정	
1989년 2월 28일 개정	
1991년 2월 28일 개정	
1994년 2월 26일 개정	
1995년 2월 28일 개정	
1996년 2월 29일 개정	
1997년 2월 28일 개정	
1998년 3월 21일 개정	
1999년 3월 19일 개정	
2000년 3월 24일 개정	
2001년 3월 9일 개정	
2001년 7월 27일 개정	
2002년 3월 8일 개정	
2004년 3월 12일 개정	
2004년 8월 20일 개정	
2006년 3월 10일 개정	
2009년 3월 13일 개정	
2010년 3월 12일 개정	
2011년 3월 18일 개정	
2012년 3월 16일 개정	
2013년 3월 15일 개정	
2015년 5월 28일 개정	
2016년 3월 11일 개정	
2018년 3월 16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상호) 이 회사는 현대제철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HYUNDAI STEEL COMPANY 이라 표기한다.

제 2 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철, 제강, 압연, 강관, 주조, 단조재의 생산 및 판매사업
2. 원료, 부원료, 부산물, 금속재생재료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3. 비철금속의 제조, 가공, 판매
4. 자동차 부속품 제조 및 판매
5.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전사업, 산업가스사업 및 자원개발사업
6. 육상 및 항만 운송업, 창고업, 항만시설사업
7. 건설업, 토건업, 건설기계 및 부동산임대업, 강구조물 및 철물 설계 공사업
8. 기계류 제작 설치 및 매매업
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10. 교육사업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
11. 탄소섬유 및 유리섬유 등 복합소재 제조 및 판매
12. 전 각호에 부대된 일체의 사업

제 3 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이 회사는 본점을 인천광역시에 두고, 영업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국내외의 각지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yundai-steel.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억주로 한다.

제 6 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 7 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 8 조(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8 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2.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삼가시켜 배당한다.
4.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7. 이사회의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조의 3(상환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 이 회사가 발행할 상환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 총수는 30,000,000주로 한다.
2. 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률을 정하되, 그 배당율은 년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8조의 2에 의하여 발행된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보다 후순위로 배당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상환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시켜 배당하지 아니한다.
4. 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누적된 미배당분 포함)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7. 상환우선주식의 상환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1 + (본조②항의 배당률 \times 상환하는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경과일수 ÷ 365) \times 액면가액] \div$ 발행가액】의 금액으로 한다.
 - 2) 상환기간은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일자의 직전 사업년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부터 위 이사회가 정한 일자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위 이사회가 정한 일자가 위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일 이전이거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인 경우 상환기간은 정기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1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상환기간내에 소정의 우선적 배당(누적된 미배당분 포함)을 받지 못한 경우 상환기간은 소정의 우선적 배당을 완료한다는 결의가 있는 정기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1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3)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우선주식을 모두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환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일부를 우선 상환하며, 그 대상은 추첨 또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정한다.

제 9 조(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4)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5)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 회사와 합작투자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한 외국금융기관 또는 기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7)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8) 은행등 금융기관의 출자전환에 의한 자본참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9)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국내외의 합작회사, 기술제공회사, 원료 또는 설비제공 회사 등 기타 사업상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 9 조의 2(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단, 제8조3에 의거 발행하는 상환우선주에 대하여는 그 존속기간에 비례하여 일할배당한다.

제 9 조의 3(일반공모증자 등)

1. 이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 회사는 액면금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할 수 있다.
3. 이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와 합작투자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한 외국금융기관 또는 기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의 자본참여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3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등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9 조의 4(주식매수선택권)

1. 이 회사는 회사의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회사는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원 또는 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을 일시에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전원에게 부여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의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매수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6.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부여받은 임원 또는 직원은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하여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 또는 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 또는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2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 조(시가발행)

1. 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 때에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가로 발행하는 신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할 수 있다.

제 11 조(명의개서 대리인)

1.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3.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사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제3항의 업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2.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한 후 1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 12 조의 1(주주명부 작성 및 비치)

1.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통지 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2.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소유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3 조(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발행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3 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하고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3 조의 3(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사채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3 조의 4(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3 조의 5(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 14 조(소집시기)

1.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5 조(소집권자)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이

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이사가 소집한다.

제 16 조(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한국경제신문 외 1개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2.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단,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이 외에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18 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로 하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19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0 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1 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삼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2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4 조(부의사항)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결산승인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3. 발행 예정주식 총수의 증가 및 자본감소
4. 중요한 영업의 양도 및 양수 또는 영업 전부의 임대
5. 주식의 병합
6. 합병 및 해산(단, 합병의 경우 상법규정에 의한다.)
7. 정관의 변경
8.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요구한 사항

제 25 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4 장 이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제 26 조(이사의 수)

1. 이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의 수를 6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단, 이사회는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결원으로 인해 사외이사의 수가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이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 27 조(이사의 선임)

1. 이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이사 중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여야 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보할 이사는 별도로 구분하여 선임한다.
2. 이 회사의 이사는 출석한 주주의 결의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선임한다.
3.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는 그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법 제382조의 2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 27 조의 2(사외이사의 자격)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중에서 상법 등 관련법령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그 자격요건을 결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 28 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한다.

제 28 조의 2(이사의 해임과 결원)

1. 이사의 해임은 상법 제385조에 따른다.
2.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 1)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한 때
 - 2) 파산선고를 받았을 시
 - 3)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시
 - 4) 사망시

제 29 조(이사의 보선)

1.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30 조(대표이사) 이 회사는 이사회에 결의로 대표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이 없는 경우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0 조의 2(의장)

1. 이사회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이후 첫회 이사회에서 임기 1년의 이사회의 의장을 선임한다.
2. 의장이 임시의장을 지명하지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의장을 대신하여 의장직무를 대행할 이사의 순서를 정한다.
3.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의장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을 지명하며, 의장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본조 제2항에서 정한 순으로 이사회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30 조의 3(의안) 이사회의 의안은 의장이 제안한다. 단, 기타 이사가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1 조(이사의 직무)

1.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2.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제 31 조의 2(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1 조의 3(이사의 책임)

1. 이사는 임무해태 등의 경우에 상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의 책임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한다.
3.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 유용금지), 제398조(자기거래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의 4(이사회내 위원회)

1.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추가로 회사 경영전략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그 조직 및 운영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4)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
4.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 32 조(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해 사외이사 수가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3.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 이어야 한다.
5.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의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2 조의 2(감사위원회의 직무)

1.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2.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5.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회계에 관한 장부기록과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으며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6.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8.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9.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10.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11.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제 32 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33 조(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제 34 조(이사회의 소집과 구성)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법령과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2.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소집을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 제 35 조(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2. 단,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직접투자를 위해 이사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4분의3이상의 출석에 출석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제 36 조(부의사항) 이사회는 법률로 제정한 사항외의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주주총회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2.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주주 및 종업원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
 5. 중요한 차입, 차관(사채 및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투자 및 시공계획
 7. 기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37 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 그리고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 38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39 조(상담역 및 고문)

1. 대표이사는 최고경영자의 추천으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역 등을 위촉할 수 있다.
2. 최고경영자는 경영진에 준하여 이들의 보수와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39 조의 2(경영진의 선임과 보수)

1.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둘 수 있다.
2. 경영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계 산

제 40 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1 조(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1.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2. 이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므로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 43 조(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3.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3 조의 2 (분기 배당)

1.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 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2. 제1항의 분기 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분기 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 4)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5) 직전결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6) 분기 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4.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5. 분기 배당을 할 때에는 제8조의 2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 주식과 동일한 배당율을 적용한다.

제 44 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오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주식을 병합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8조 제1항의 이사임기 적용은 이 정관 변경후 새로이 선임되는 이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의 2,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43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조의 2의 개정규정은 본정관 개정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한다.
2.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2 및 제13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이사의 시차임기제)

- 1) 제3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는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 이사수를 정한다.
- 2)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중 제1그룹에 속한 이사는 제34기 정기주주총회까지 2그룹에 속한 이사는 제35기 정기주주총회까지, 3그룹에 속한 이사는 제36기 정기주주총회까지 임기를 가진다.
3. (사외이사의 수) 제33기 선임될 사외이사의 수는 제26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명 이상으로 한다.
4.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다.
5. (내규)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서 업무상 필요한 세칙이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제35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0. 3. 24)
2.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경과규정)
 - 1) 이 정관 개정은 제26조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사업년도 종료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까지는 사외이사 수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총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2) 제3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제36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1. 3. 9)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사회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규정) 이 정관의 개정은 제2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일까지 과반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31조의3, 제32조의2, 제33조, 제35조, 제41조, 제43조의2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8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 제11조
3항, 제11조의 2, 제13조의 4 및 5의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 제43조 제3항의 규정은 제59기 결산배당부터
적용한다.